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백혜련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978

발의연월일: 2020. 6. 25.

발 의 자:백혜련·홍익표·임호선

임종성ㆍ이학영ㆍ신현영

최종윤ㆍ이원욱ㆍ남인순

민병덕 · 이학영 의원

(119]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, 모의 성명, 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생부가 내용인지 허가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, 미혼부의 출생신고를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.

그러나 생모의 인적사항 중 일부를 아는 경우 등 친모 특정이 가능하면, 이를 이유로 미혼부의 출생신고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다수 발생함.

이와 관련하여 최근 대법원에서는 현행법을 폭넓게 해석하여 모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, 등록기준지 중 일부를 알 수 없거나, 모가 소재불 명인 경우에도 혼외자에 대한 부의 출생신고를 인정해야한다고 판결 한 바 있음.

이에 모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, 등록기준지 중 일부를 알 수 없거나, 소재 불명 등의 이유로 모가 사실상 협조할 수 없는 경우에도 미혼부 의 출생신고를 인정하는 규정을 명문화하여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(안 제57조제2항).

법률 제 호

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57조제2항 중 "모의 성명·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"을 "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"으로 하고, 같은 항에 각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1. 모의 성명, 등록기준지, 주민등록번호 중 어느 하나 이상을 알 수 없는 경우
- 2. 모가 출생신고와 관련된 협조를 하지 않거나 소재불명인 경우
- 3. 제2호 이외의 사유로 모가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7조(친생자출생의 신고에 의	제57조(친생자출생의 신고에 의
한 인지) ① (생 략)	한 인지) ① (현행과 같음)
② <u>모의 성명·등록기준지 및</u>	② <u>다음</u> 각 호의 어느 하나에
<u>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</u> 경	<u>해당하는</u>
우에는 부의 등록기준지 또는	
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	
확인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신	
고를 할 수 있다.	
<u> <신 설></u>	1. 모의 성명, 등록기준지, 주민
	등록번호 중 어느 하나 이상
	을 알 수 없는 경우
<u> <신 설></u>	2. 모가 출생신고와 관련된 협
	조를 하지 않거나 소재불명인
	<u>경우</u>
<u><신 설></u>	3. 제2호 이외의 사유로 모가
	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
③ ~ ⑤ (생 략)	③ ~ ⑤ (현행과 같음)